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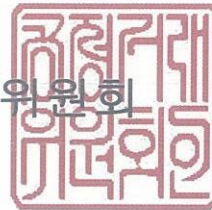
공정거래위원회

수신자 한국공정경쟁연합회
(경유)

제목 CP 운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

1. 귀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귀 연합회가 경쟁연 준08-117로 보내온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(CP) 운용방향에 관한 공식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입니다.
3. 귀 연합회는 우리 위원회가 '02.9월 배포한 「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안내자료집」 중 “기업은 CP운용과정에서 법 위반사실을 내부적으로 발견하여 제재 조치를 취한 사실을 경쟁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,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시 작성·보관한 문서를 경쟁법집행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”이라는 내용이 현 시점에서 계속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.
4. 이에 대하여 '02년에 밝힌 우리 위원회의 입장은 여전히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.
5. 아울러 기업이 법 위반자를 자체적으로 제재하였다 하여 우리 위원회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, 기업이 내부적 제재시 작성·보관한 문서 이외에 다른 증거가 발견될 경우 우리 위원회는 법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공정거래위원회



행정사무관

김상윤

경쟁정책총괄과
장

신영선

경쟁정책국
장

국 전결 01/13

김학현

협조자

시행 경쟁정책총괄과-68 (2009. 01. 13.) 접수

우 137-966 서울 서초구 반포로 648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총괄과 / <http://www.ftc.go.kr>

전화 02-2023-4225 전송 02-2023-4222 / ksy77@ftc.go.kr / 대국민공개